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자 율 관 리 어 업 육 성 및 지 원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제 정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자율관리어업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052호, 2020.2.18. 제정, 2021.2.19.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과 자율관리어업 정책의 효율적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을 정함(안 제2조)
- 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구성 단위 및 구성 요건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공동체의 각 유형별 구성원 수 등을 정함(안 제3조·제4조)
- 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등록·변경등록에 관한 사항과 등록취소 절차 등을 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라. 공동체 자체규약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를 정함(안 제8조·제9조)
- 마. 공동체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도와 시·군·구에 시·도 지역협의회와 시·군·구 지역협의회를 각각 둘

수 있도록 정함(안 제10조)

바. 공동체의 평가를 위해 해양수산부에 공동체 평가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안 제11조)

사. 공동체 활동실적의 평가대상과 평가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2조)

아. 공동체 지원을 위한 육성사업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절차 등

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자. 우수 공동체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실시 예정

라. 기 타 : 1) 규제영향분석서, 별첨

2) 입법예고 전

해양수산부령 제 호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 ①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어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수산물 생산현황, 소득현황 등 경영활동에 관한 사항
3. 자율관리어업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율관리어업의 실태파악에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3조(공동체의 구성 및 참여 유형) ① 지역을 중심으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구성할 경우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행정리(行政理) 또는 이들의 연합체로 한다.

② 어구·어법을 중심으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구성할 경우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같은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자 또는 이들의 연합체로 한다.

③ 공동체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신규로 참여하고자 하는 공동체는 자체규약 및 사업계획서에 해당 유형을 선택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마을어업 공동체 : 마을어업 관련 어촌계,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양식업 중 바닥식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자로 구성된 공동체
2. 어선어업 공동체: 「수산업법」에 따라 어선 및 어구를 이용한 어업허가 또는 어업면허(마을어업은 제외한다)를 받은 자로 구성된 공동체
3. 양식업 공동체: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양식업면허(바닥식양식업 및 축제식양식업은 제외한다)를 받은 자로 구성된 공동체

4. 내수면어업 공동체: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제11조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 신고한 자로 구성된 공동체

5. 복합어업 공동체: 마을어업 공동체 구성원과 별표 1에 따른 비율 이상의 어선 어업인으로 구성된 공동체

6. 광역 공동체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참여유형으로 시·도 단위 또는 시·도 단위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

제4조(공동체의 구성 요건) ① 자율관리어업 활동은 공유수면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공동체별 최소 구성원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어업 공동체 :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 30명
2. 어선어업 공동체 :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 20명
3. 양식업 공동체 :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자 20명
4. 내수면어업공동체 :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자 10명
5. 복합어업 공동체 : 별표 1에 따른 구성원 수
6. 광역 공동체 : 제3조제3항제6호에 따른 자 100명

제5조(공동체의 등록 등) ① 법 제9조제2항,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공동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등록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 공동체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체 자체규약
2. 자율관리위원회 구성현황
3. 사업계획서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체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공동체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동체를 등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체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체 등록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해양수산부, 시·도, 관할 수협, 한국수산물회에 별지 제4호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동체의 등록이 취소된 공동체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취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영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공동체가 등록이 취소되거나 자진해산한 해당 공동체의 구성원이 참여하여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할 경우 새로운 공동체의 구성원 중 등록취소 또는 자진해산한 공동체 구성원의 비율이 20%이상이면 새로운 공동체는

등록취소 또는 자진해산한 공동체의 등급을 승계한다.

제6조(변경등록) ① 법 제9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물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2. 공동체 자체규약 중 공동체의 유형, 어장 및 자원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등록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체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고, 변경등록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해양수산부, 시·도, 관할 수협, 한국수산물회에 별지 제4호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취소 절차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공동체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최근 2년간 공동체 구성원의 수산관계법령 위반 건수가 전체 구성원수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2. 제12조제4항에 따른 활동실적 본평가 점수가 2년 연속으로 1,000점 만점 기준으로 500점 미만인 경우
3. 공동체로 등록되었다가 어업면허·허가 등이 소멸되어 공동체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제4조제2항에 따른 구성원수에 미달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체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공동체 위원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한 내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체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공동체에 그 사실과 취소 사유를 알리고, 그 취소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해양수산부, 시·도, 관할수협, 한국수산회에 별지 제4호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체 자체규약 제정 등) ① 공동체는 공동체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어업인 대표를 위원으로 하는 자율관리어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다만, 마을어업 공동체 또는 복합어업 공동체를 구성하는 어촌계원의 수가 과반 이상일 경우 어촌계의 어촌계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 1명을 부위원장으로 두어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관계 어업인의 합의가 도출된 공동체 자체규약을 제정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 공동체의 유형, 구성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 위원회 구성, 총회, 적용범위 등
2. 어장 및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 어장환경 개선, 어구·어법 제한, 생산량 조절, 자원조성 등
3.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 판매 및 유통, 투자 및 배분, 채투자 계획 등
4.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 일시·집중조업 완화 방안, 위반자에 대한 자체벌금 부과·자격 및 권리제한 등

제9조(공동체 자체규약 변경 등) ① 위원회는 공동체 자체규약 중 공동체의 유형, 어장 및 자원관리에 관련된 사항은 제10조에 따른 시·군·구 지역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 하며 그 밖의 내용은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약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공동체와 관계기관(해양수산부, 시·도, 시·군·구, 관할수협, 한국수산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규약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동체의 유형이 변경된 때에는 다음 연도 활동실적 평가부터 변경된 유형으로 평가한다.

제10조(지역협의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도에는 시·도 지역협의회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시·군·구 지역협의회를 각각 둔다.

1. 공동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공동체의 평가 및 우수공동체 추천에 관한 사항
3. 공동체 자체규약 심의에 관한 사항
4. 사업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1. 공동체 대표
2. 지구별·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
3.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에서 자율관리업 업무 관련자로 추천한 사람

4.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수산담당공무원

6. 그 밖에 자율관리업의 정착과 확산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지역협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지역협의회 위원장은 지역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지역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지역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관리업 담당부서로 하여금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역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공동체 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체 평가위원회를 해양수산부에 둔다.

1. 공동체 등급결정에 관한 사항

2. 우수공동체 선발에 관한 사항

3. 시·도 추천 공동체 현장 확인·검증

4. 공동체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동체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체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이 되며, 위원은 공동체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공동체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공동체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체 평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4호, 영 제3조에 따른 한국수산물회 하예금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동체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12조(활동실적 평가) ① 법 제11조제2항,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활동실적 평가의 대상은 전년 12월말까지 등록된 공동체의 활동실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공동체의 활동실적은 전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자율관리어업 활동실적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활동실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공동체 지원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 및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체 육성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지원대상 공동체를 선정할 후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공동체 위원장 및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장에게 선정사실을 통보한다.

③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계획서 및 자부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조금교부 및 자금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계획수립 및 협의) ① 공동체는 육성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이미 실시된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을 선정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수 어업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사업을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도 또는 시·군·구는 공동체가 수립한 사업계획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육성사업비 사전심의위원회(이하 "사전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공동체 사업계획 수립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2. 육성사업비 집행사항에 관한 사항

③ 사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사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 또는 시·군·구 수산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사업집행주체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관할지역 시·군·구 연합회장 1명

2. 관할지역 지구별·업종별 수협 조합장 1명

3. 수산분야 전문가 2명

④ 사전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공동체 위원장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사전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사업계획의 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안내판 설치) 사업집행주체는 육성사업비를 지원받은 공동체에 대하여 어장의 위치 및 면적, 자원관리 내용, 회원 및 체험객 준수사항 등이 표시된 자율관리어업 활동 안내판을 별표 2에 따라 작성·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안내판을 설치한 공동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우수 공동체의 추천 등)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추천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공동체 구성원 수에 따른 복합어업 기준(제4조제2항제5호 관련)

공동체 구성원수	공동체 구성원 수중 어선어업인 참여 비중	어선어업 참여 인원수 (최저/최고치 기준, 반올림)
30 ~ 50명	25% 이상	8 ~ 13명
51 ~ 100명	20% 이상	10 ~ 20명
101 ~ 200명	15% 이상	15 ~ 30명
201 ~ 300명	15% 이상	30 ~ 45명
301 ~ 400명	15% 이상	45 ~ 60명
400명 이상	15% 이상	60명

※ 계산방식(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 구성원 수 × 어선어업 종사자 수 비중
 - 30명인 경우 8명 이상(30명×25%), 70명인 경우 14명 이상(70명×20%), 120명인 경우 18명 이상(120명×15%)이 각각 어선어업 구성원으로 참여하여야 함

자율관리어업 활동 안내판 작성례(제15조 관련)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동안내

☐ 자율관리어업 참여일 : 년 월 일

☐ 참여인원 : 230명(연안자망 30척, 어업인 200명 등)

☐ 대상어장

○ 위치 : 00도 00군 00면 00리 지선 등

○ 면적 : 예) 경남 제1001호, 1002호 등 2,000ha

☐ 주 관리대상 어종 : 불락, 꽃게, 민꽃게, 낙지, 전복, 해삼 등

☐ 주요활동 내용

○ 채포금지기간

- 전복 : 9월 1일부터 ~ 10월 31일까지

- 꽃게 : 6월 16일부터 ~ 8월 15일까지

○ 채포금지체장

- 불락 : 15cm이하(전장), 소라 : 5cm이하(각고), 백합 : 5cm이하(각장)

○ 기타

- 매월 10일과 25일은 바다쓰레기 청소

- 조업시 혼획된 불가사리 및 폐어구 등은 바다에 버리지 말고 수거

- 불업어업 발견시 관계기관 및 공동체위원장 등에게 신고

☐ 준수사항

○ 00자율관리어업 공동체는 수산자원 보호 및 불법어업 근절 등을 위하여 위 사항을 자체규약으로 정해 실천하고 있으므로, 공동체 구성원은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 및 외부인은 관리대상어장 출입시 공동체 위원장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00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위원장

연락처 : 000-000-0000

* 크기 : 120cm×100cm
 높이 : 지상에서 100cm 이상
 설치장소 : 마을어귀 또는 어장 입구 등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공동체명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전화	T) H)	
	주소						
	영어종사경력	년		참여 유형	마을, 양식, 어선, 내수면, 복합(마을+어선) 중 택1		
	공동체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어촌계, 기타		참여가구 (인원)	()호 ()명		
신청내용	주요업종		사업규모		면허 허가 신고	건(m²) 건(m², m, 척, 폭, 통 등) 건(어업규모 :)	
	사업 예정지역			대상품종			
	주요 사업내용 (사업비)	1.	2.	3.	4.	5.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공동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공동체 자체규약 3부 2. 자율관리위원회 구성현황 3부 3. 사업계획서 3부	수수료 없음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신청인	→	시장·군수·구청장
	→	서류검토
	→	시장·군수·구청장
	→	통보
	→	시장·군수·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변경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공동체명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공동체 소재지 주소			공동체 대표번호	
신청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변경사유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공동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등록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신청인	→	처리기관: 시·군·구
	→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	변경등록 여부 심사
	→	변경등록
	→	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 호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등록증

- 1. 공동체명:
- 2. 참여유형 : ☐마을 ☐양식 ☐어선 ☐내수면 ☐복합 ☐광역
- 3. 성명(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4.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5.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로 등록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앞쪽)

[‘ 년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등록·변경등록·취소 현황 통보

가. 공동체 등록 현황

순 번	등 록 일 자	공 동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참 여 유 형	참 여 인 원	주 요 사 업	비 고
합 계								

나. 공동체 변경등록 현황

순 번	변 경 등 록 일 자	공 동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참 여 유 형	참 여 인 원	주 요 사 업	비 고

다. 공동체 취소 현황

순 번	취 소 일 자	공 동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참 여 유 형	참 여 인 원	취 소 사 유	비 고
합 계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4항, 제6조제3항, 제7조제3항에 따라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등록·변경등록 및 취소 현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수협장, 한국수산업회장 귀하

※ 현황 통보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 ① 등록·변경등록 일자 :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로 등록·변경 등록한 날짜
- ② 공동체명 및 대표자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명 및 대표자 성명
- ③ 소재지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가 소재한 주소지를 “읍·면·동”까지 기입
- ④ 참여유형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자체규약에 의한 어업형태(예: 마을, 양식, 어선, 내수면, 복합, 광역 등)
- ⑤ 참여인원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전체인원
- ⑥ 주요사업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자체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기입
- ⑦ 취소일자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등록이 취소된 날짜
- ⑧ 취소사유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등록을 취소하는 주요 사유를 간략히 기입
- ⑨ 비 고 : 등록 취소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 기입

우수공동체 추천서

공동체	명칭	
	참여유형	
대표자	성명	E-mail
	주소	전화번호
사업규모	면적	건(㎡)
	허가	건(㎡, m, 척, 폭, 통 등)
	신고	건(어업규모:)
추천내용	☐ 주요활동 실적 ☐ 성공사례 ☐ 향후 주요활동 추진계획 ☐ 다음연도 주요사업 계획 요약(현안·숙원 사업) ☐ 기타 참고사항 등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공동체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인